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12. 16 선고 2020나29042 판결 [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12. 16 선고 2020나29042 판결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9. 22 선고 2020가단105174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 종결 2020. 12. 2.

판결 선고 2020. 12. 16.

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9. 22. 선고 2020가단105174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58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79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'2. 추가판단'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피고는 진입로 문제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,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79,000,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, 즉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및 해제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메일이나 내용증명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

주장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민철기

판사김광진

판사이평근